



수신자 성동구청

(경유)

제 목 「공공안심상가 관리위탁」 원가계산 용역 견적서 제출 件

1. 귀 성동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귀 성동구청에서 저희 연구원에 견적 의뢰 하신 「공공안심상가 관리위탁」 원가계산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용역명	용역수행기간	견적금액
「공공안심상가 관리위탁」 원가계산 용역	착수(계약)일로부터 【 15 】일 이내	일금 삼백오십이만 원정 【 ₩3,520,000 】

- ▣ 견적금액 : 부가가치세(VAT) 포함
- ▣ 산출근거 : 용역비 산출 내역서 및 용역비 비목별 단가 산출근거 별첨 2Page
- ▣ 업무범위 : 。 원가계산 용역  
。 보고서 10부

사단법인 산업경제정보연구원 이사장



담당 박원경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전결 06/07  
이사 김태형

협조자

시행 산경정 180607-073 ( 2018.06. . ) 접수 ( )

우 0397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8(성산동) 302호 / <http://www.ieii.co.kr>

전화 (02) 6951-1213 / 전송 (02) 6951-1214 / [iei710@daum.net](mailto:iei710@daum.net) / 공개

【붙임 1】

## 용역비 산출 내역서

■ 용역명 : 「공공안심상가 관리위탁」 원가계산 용역

비 목		금 액	산 출 내 역				
순 용 역 원 가	인 건 비	책임연구원	624,258	1인 × 10일 × 30% × 208,086 원/일			
		연구원	765,878	1인 × 12일 × 40% × 159,558 원/일			
		연구보조원	554,626	1인 × 13일 × 40% × 106,659 원/일			
		보 조 원					
		소 계	1,944,762				
	경 비	여 비	책임연구원	270,000	1인 × 6일 × 45,000 원/일		
			연구원	480,000	2인 × 6일 × 40,000 원/일		
			연구보조원				
		유인물비	352,000	식			
		전산처리비					
		시약 및 연구용재료비					
		전산처리비					
		회 의 비					
		임 차 료					
교통통신비							
감가상각비							
소 계	1,102,000						
계	3,046,762	인건비 + 경비					
일	반	관	리	비	153,238	순용역원가 × 5.03% 【 ※ 6% 이내 】	
이				운		비영리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	
합				계	3,200,000	순용역원가 + 일반관리비 + 이운	
부	가	가	치	세	320,000	합계 × 10% 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】	
용	역	비	견	적	금 액	3,520,000	부가가치세(VAT) 포함

사단법인 산업경제정보연구원 이사장



【붙임 2】

## 용역비 비목별 단가 산출근거

### 1. 인 건 비

직 급	기본급	상 여 금	퇴직급여충당금	계	일 / 인건비
책임연구원	월 3,169,323	1,056,441	352,147	4,577,911	208,086
연구원	월 2,430,194	810,064	270,021	3,510,279	159,558
연구보조원	월 1,624,503	541,501	180,500	2,346,504	106,659
보조원	월 1,218,419	406,139	135,379	1,759,937	79,997

- 기본급 : 「예정가격 작성기준」(별표 5)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('18) 적용 - 기획재정부  
「예정가격 작성요령」<별표 2>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(2018) 적용 - 행정안전부

※ 용역 참여율 50% 산정 기준

- 상여금 : 기본급에 대하여 년 400% 지급 기준
- 퇴직급여충당금 : 기본급 + 상여금에 대하여 년 1/12 충당 기준
- 일/인건비 : 월 근무일수 22일 기준

### 2. 경 비

직 급	등 급	자 동 차 입	일 비 【1일당】	숙 박 비 【1박당】	식 비 【1일당】	계
책임연구원	제1호등급	실 비	20,000	실 비	25,000	45,000
연구원	제2호등급	실 비	20,000	실 비	20,000	40,000
연구보조원	제2호등급	실 비	20,000	실 비	20,000	40,000

- 경 비 : 「공무원 여비규정」[시행 2017.7.26.] - 대통령령 제28211호
- 유인물비 : 추정되는 유인물수를 감안하여 실비 적용
- 전산처리비 : 컴퓨터 사용료 기준
-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: 실비 계산 - 사용시
- 회의비 : 외부인사 초청회의비 기준(2급 공무원 이상 수준의 위원회 위원수당)
- 임차료 : 특수실험 실습기기 및 회의장 사용료 기준
- 교통통신비 : 시내교통비, 전신전화사용료, 우편료 등으로 일 20,000원 기준

### 3. 일반관리비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적용 - 기획재정부 예규  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적용 - 행정안전부 예규
- ※ 기타용역 : 100분의 6(6%)이내 산정 기준

### 4. 이 윤

- 「민법」 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므로 제외